

#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 대상구분	오류내역
GSMA	A01018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(종류C-r)	K55210CY7819	K55210CY7918	20210108	1	
GSMA	A01018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(종류C-re)	K55210CY7819	K55210CY7926	20210108	1	
GSMA	A01018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	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(종류C-s)	K55210CY7819	K55210CY7934	20210108	1	
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없음
- (5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(세부)] : 해당없음
- (6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 코드	회사 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(운용펀드기준)					소규모 펀드수					소규모펀드 비율 (=J/E)	제출기준일
		전체 (A)	모범규준제 4 조제 3 항 제 1 호펀드 (B)	모범규준제 4 조제 3 항 제 2 호펀드 (C)	모범규준제 4 조제 3 항 제 3 호펀드 (D)	차감 계 (E=A-B-C- D)	전체(F)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제 1 호 펀드(G)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제 2 호 펀드(H)	모범규준 제 4 조제 3 항제 3 호 펀드(I)	차감 계 (J=F-G-H- I)		
GSMC	A01018	94	0	0	6	88	10	0	0	5	5	5.6818	20210131

\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